

### 3. 品質管理의 對象

品質管理對象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原料: 新鮮하고 安全한 것을 使用.
- (2) 製造加工工程: 衛生的으로 實施.
- (3) 機械·器具類: 安全하고 清潔을 維持  
(蒸氣·熱湯·消毒劑로 殺菌, 作業後에는  
깨끗이 씻음).
- (4) 添加物: 指定되어 있고 “食品添加物”이  
란 標示가 되어 있으며, 規格에 맞는 것  
을 使用.
- (5) 容器·包裝: 許可를 받은 製品으로서 規  
格에 맞는 것을 使用).

其他 用水, 從業員등이 있다.

### 4. 品質管理의 改善方向

지금까지의 品質管理는 주로 衛生的인 側面이 強調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品質의 改善向上에 主力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品質의 高級化를 期해야 할 것이다. 生活水準의 向上이나 國際化時代에 對備하기 위해서도 이는 必要不可缺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自體 品質管理(檢査分野)를 強化해야 한다. 當局의 檢査能力에도 限界가 있지만 自體의 檢査를 철저히 施行하여 不良品의 出荷를 防止해야 할 것이다. 〰

## 食品衛生制度 改善方向

全 啓 休  
〈保社部 衛生制度課長〉

### 1. 現況 및 문제점

우리들의 食生活에서 加工食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점차 增加하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앞으로 産業化동의 影響으로 계속될 전망에

있다. 그러나 “食品衛生”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位置와 그러한 狀況에서 우리들이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問題點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들의 衛生觀念에 있어서는 社會 階層간에 인식의 差異는 있으나 一般의 水準에 상당히 낮은 水準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들의 傳統의 食生活 慣習이 그러하며 특히 營業場所든 家庭에서든 화장실 利用 慣習은 아직도 결코 衛生的이라고 할 수는 없는 狀態이다. 그 결과 食品業 從業者는 衛生管理라는 問題를 소홀히 하게 되고 衛生施設의 改善 維持에는 관심이 낮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典型的인 例를 우리는 政府가 主導해서 推進하고 있는 注文食單制의 實績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른 面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制度라고 하더라도 그 制度가 實踐되기 위해서는 그에 關連되는 國民들의 인식의 對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우리 食品業界가 全面的으로 零細한 點이다. 製造·加工業의 경우에는 從業員 10名 未滿이 83%에 이르며, 接客業의 경우는 10坪 未滿 業所가 65%이고 더우기 流通構造에 있어서도 最近에는 연쇄점 등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구멍가게 중심이 되어 있다. 특히 零細한 貨店店舖가 잘 운영되면 建物主의 淸포로 인하여 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營業이 不可能해지게 되어 食品 營業主의 地位가 不安하게 되고 따라서 衛生에 關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食品衛生行政에 關하여 보면 위생 지도능력은 質的인 面에서나 量的인 面에서나 行政需要를 當할 수 없는 處地에 있으며 더우기 食品衛生制度 發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研究機能은 全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研究機能을 當하고 있는 機關은 食品檢査業務에 쫓기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食品衛生에 가장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各種 規格基準制度에 있어서도 아직 만족할 만한 體制를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未洽하다고 하겠

다. 그 중에서 代表的인 例는 自家規格基準制度를 認定하고 있는 點이라든가 各種 有害物質許容基準의 未備등을 들 수 있다.

## 2. 改善方向

우리가 食品衛生制度를 改善한다고 할 때에는 食品에 관련되는 衛生水準을 向上코자함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不良食品을 우리 社會에서 根源的으로 封鎖하고 良質의 食品을 開發 보급하며, 生産業所의 시설은 衛生的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인 一般國民의 衛生的인 食生活慣習이 定着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행사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찾는 外國人에게 우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우리들이 文化民族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早速히 改善되어야 하겠다.

첫째, 衛生管理基準을 보다 具體化하여 我們的 生活에서 定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基準은 食品에만 限定되어서는 實踐에 있어서 實效性이 약하게 되며 따라서 전반적인 面에서 생각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령 뿐만 아니라 여타의 衛生關係法 令에서도 기준을 具體化하도록 하였다.

둘째, 食品의 製造·流通의 側面에서 規制를 強化하도록 하여 人體에 有害한 食品은 물론이고 許可를 받지 아니한 食品이 製造되거나 販賣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製造·加工食品은 檢査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檢査機能도 擴充하여 民間團體의 檢査機能을 活用하고 製造業所의 自體檢査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셋째, 영세업소 的인 問題점을 解消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指導·支援을 制度化하여 食品業界가 健全하게 發展할 수 있도록 自體指導員制度, 食品振興基金制度를 새로 도입하게 되었다.

自律指導員制度는 零細한 業主의 營業能力 培養과 위생관리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食品振興

基金을 위생시설을 改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째, 食品衛生觀念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教育·홍보를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이나 接客업주에 대하여는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기관도 민간단체를 적극참여 시켜 나갈 계획이며 보다 효과적인 教育교재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비위생적이거나 有害食品 製造業者等 法令위반자에 대한 감시와 罰則을 強化하여 不正·不良食品이 우리 社會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86년부터는 기동장비를 갖춘 상설기동감시원을 전국에 80명 배치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되고, 법개정안은 罰則을 대폭 強化하였다. 특히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規制의 實效性을 確保하고 營業主의 營業에는 가급적 피해가 적도록 하여 식품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은 당분간 앞서 말한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活用토록 하였다.

끝으로, 食品위생제도의 정책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研究기능을 조장하여 合理的인 制度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食品영양연구원을 식품공업협회에 부설하도록 하며 食品産業의 發展과 團體의 均衡된 영양섭취가 가능하도록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 3. 結 論

食品衛生制度는 政府의 노력만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食品을 生産하는 部門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一般國民의 自發적이고도 적극적인 參與속에서 早速히 발전 정착되는 것 이라 하겠다.

따라서 業界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는 정부, 소비자, 생산자의 중간에서 각자의 편중된 생각을 지양하여 국가발전이라는 觀點에서 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발전이 된다는 사실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